

충남대학교 LED 전광판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16. 11.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정문에 설치된 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라 함은 전광판을 통해 대외적 홍보, 전달 등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 등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표시내용 및 범위) 전광판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의 주요행사 (개교기념일, 입학식 또는 학위수여식, 교직원 정년퇴임식, 총장 이·취임식, 교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 또는 학술대회)
2. 대학의 주요 정책, 제도 등 공지사항
3. 대학의 홍보와 관련된 사항(전교생 대상으로 해당되는 학사일정, 원서접수 및 수강생 모집 등)
4. 우리 대학교가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행사 또는 정부정책 홍보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문자 표시) 전광판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표시 수량) ① 전광판의 표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문의 신호대기 시간(180초)을 기준으로 표시 수량은 최대 30개 내·외의 총량제로 운영하되 총량제에 의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의 주요행사 : 최대 15개 내·외로 한다.
2. 대학의 주요 정책, 제도 등 공지사항 : 10개 내·외로 한다.
3. 대학의 홍보와 관련된 사항 : 10개 내·외로 한다.
4. 우리 대학교가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행사 또는 정부정책 홍보 : 각 기관별 대표 1개로 제한한다.

② 전 항의 제3호, 제4호의 전광판의 표시는 각 기관(부서별)최대 1개로 제한한다.

제6조(표시 기간) ①전광판의 표시기간은 교내의 주요행사 및 표시 일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행사 개시 14일전 부터 행사 종료 후 1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대학의 주요 정책, 제도, 실적, 성과, 정부행사, 정부정책 등은 구성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표시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되 게시물 총량제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내용은 표시를 종료한다.
③기타 단순한 안내 홍보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제7조(표시 글자 및 시간) ①전광판의 행수는 2행이나 3행을 원칙으로 하고, 중심행의 글자크기는 다른 행의 글자크기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광판의 표시제목 1행은 20자 이내로 하고 2~3행은 15자 이내로 한다.
③전광판의 전체 및 화면 규격은 8640×2880Pixel.(jpg파일)
④표시시간은 매행 6초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표시금지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1. 특정지역, 사람, 상품 등의 상업적으로 선전광고, 종교 등을 광고 또는 홍보하는 내용
2. 편파성, 유언 비어성, 지역갈등조장 내용
3.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4.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5. 기타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제9조(표시 신청 등) ①홍보내용 등을 전광판에 표시하고자 하는 각 기관(부서)에서는 홍보목적과 홍보물내용 및 홍보기간 송출 이미지(JPG파일 제출)을 제작하여 전광판 표시 1주일 전에 신청한다.
②대외협력팀에서는 각 기관(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관(부서)에 수정 요청하거나 표시 거부를 통보 할 수 있다.
③대외협력팀에서는 전광판에 표시될 디자인, 글자서체, 기타 지정사항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얻은 후 전광판에 표시 한다.

제10조(운용시간) 전광판의 1일 운용시간은 07:30부터 22:00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되 계절별 일몰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